



코로나 19도, 경제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

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세요~

**신속지급신청**

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
 검색창에 '소상공인 새희망자금' 검색, [www.새희망자금.kr](http://www.새희망자금.kr)에서 신청  
 9월24일과 25일에 한하여 원활한 신청,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, 2부제(홀짝제)로 접수

**확인지급신청**

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/ 추석직후 신청관련 상세안내(온라인 신청 원칙)

**문의**

전화 : 1899-1082 / 온라인(24시간 채팅상담) 소상공인114 홈페이지([www.소상공인114.kr](http://www.소상공인114.kr))



중소벤처기업부

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### [지원대상 및 지원금액]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8월16일 시행한 조치 기준

| 구분             | 소상공인 여부 | 매출액 규모   | 매출액 감소 | 지원금액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일반업종           | ○       | 연 4억원 이하 | ○      | 100만원 |
| 특별<br>피해<br>업종 | 집합금지업종  | ○        | 무관     | 200만원 |
|                | 영업제한업종  | ○        | 무관     | 150만원 |

\* '20. 5. 31. 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
**소상공인** (매출액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

(예 : 숙박·음식점업 10억원, 예술·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, 도·소매업 50억원 등)  
(상시근로자수)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,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

**일반업종** '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'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

- ('19. 12. 31. 이전 창업) '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'19년 월평균 대비 감소
- ('20. 창업) 5. 31. 이전 창업자로서 8월 매출액이 6-7월 월평균 대비 감소
- ('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)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, '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
- \* **증빙자료**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월별 카드매출액, 현금영수증 발행액, 세금신고계산서 등 국세청 신고자료

**집합금지업종** (전국)PC방,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+ (수도권)학원·독서실·실내체육시설 등

**영업제한업종**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·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

\*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(4억원 이하),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

**제외업종**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 도박업, 복권판매업, 전자담배도소매업, 성인용품소매 등
-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(14종)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

**[신속지급신청]** (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) [www.새희망자금.kr](http://www.새희망자금.kr) 접속

**1차 추석전**

- **지급대상 일반업종, 특별피해업종\*** 일부
- **집합금지(4개 업종)** (전국)노래연습장, 단란주점+(수도권)독서실, 실내체육시설 일부
- **영업제한(3개 업종)** (수도권)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

**2차 추석이후**

- **지급대상** 1차 지급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중에서 행정자료가 확보된 소상공인

**신청방법** 사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, 본인 공인인증서와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



**[확인지급신청]** 추석직후 신청관련 상세안내 (온라인 신청 원칙)

**1**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

-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누락자, 과세정보 미비자,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신청 등

\*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([www.새희망자금.kr](http://www.새희망자금.kr))의 FAQ 참조



---

#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

---

2020. 9.

# 목 차

## I 지원대상 관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.....             | 1 |
| 2.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.....              | 2 |
| 3. 지원제외 업종은 .....                | 4 |
| 4. 특별피해업종이란 .....                | 7 |
| 5.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령 시 추가 지원 여부 ..... | 8 |
| 6. 정부 지원자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.....      | 8 |
| 7. 임시 휴업자 또는 세금체납자 지원 여부 .....   | 8 |
| 8.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여부 .....          | 8 |
| 9.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 지원 여부 ..... | 9 |

## II 자금신청 관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0. 신청은 언제부터 .....         | 10 |
| 11. 신청 방법은 .....           | 10 |
| 12. 신청 및 지원 절차는 .....      | 11 |
| 13. 신청 준비서류 및 문의처는 .....   | 12 |
| 14.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여부 ..... | 12 |

### Ⅲ 지원금액 관련

- 15. 복수의 피해업종 영위 시 지급금액은 ..... 13
- 16. 추석 전 지급 가능 여부 ..... 13
- 17. 대표자 본인 계좌만 수령 가능 여부 ..... 13

### Ⅳ 매출감소 판단 관련

- 18.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..... 14
- 19. 지난해 매출은 없고 올해 매출이 있는 경우 ..... 14
- 20. 올해 창업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 ..... 14

# I

## 지원대상 관련

### 1.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?

□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<sup>①</sup>(집합금지업종, <sup>②</sup>영업제한업종) 및 <sup>③</sup>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.

| 구 분            |        | 소상공인<br>여 부 | 매출액 규모   | 매출액<br>감 소 | 지원금액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특별<br>피해<br>업종 | 집합금지업종 | ○           | 무관       | 무관         | 200만원 |
|                | 영업제한업종 | ○           | 무관       | 무관         | 150만원 |
| 일반업종           |        | ○           | 연 4억원 이하 | ○          | 100만원 |

○ '20.5.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, 실제 영업 중\*인 소상공인

\*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
### 관련 참고

#### < 지원 대상 >

① 특별피해업종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\* 기준

■ (집합금지업종)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

\* PC방,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(전국) + 학원·독서실·실내체육시설 등(수도권)

■ (영업제한업종) 수도권 음식점·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

⇒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(4억원),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

\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
② 일반업종 : '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'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

## 2. 소상공인 판단기준은?

-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**소기업\*** 중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2조에 따라,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.

\*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(예) : 숙박·음식점업 10억원 이하, 도·소매업 50억원 이하 등

-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인 미만인 사업자
- 그 밖의 업종 : 5인 미만인 사업자

### 관련 참고

#### □ 주된 업종 및 매출액,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- **(주된 업종)**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(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)
- **(매출액)**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
  -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
- **(상시 근로자 수)** 임원(개인사업자는 사장, 법인은 등기이사),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,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
  -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  - 창업·합병·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

**참고**

**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**

**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**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기호      | 매출액 기준      | 근로자 수 기준 |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0       | 120억원<br>이하 | 10인 미만   |            |       |
| 2.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1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   | C14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15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 C19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)     | C20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| C21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23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24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     | C25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| C26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C28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| C29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C30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15. 가구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32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| D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5인 미만      |       |
| 17. 수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36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18. 농업, 임업 및 어업                     | A         | 80억원<br>이하  | 10인 미만   |            |       |
| 19. 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0. 담배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C12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            | C13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       | C16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| C17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          | C18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| C22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  | C27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| C31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C33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29. 건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F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50억원<br>이하 | 5인 미만 |
| 30. 운수 및 창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| H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        | K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30억원<br>이하 | 5인 미만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            | G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33. 정보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J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) | E(E36 제외)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35. 부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L         | 10억원<br>이하  | 5인 미만    |            |       |
| 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| M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     | N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| R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        | C34       | 10억원<br>이하  | 10인 미만   |            |      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           | I         |             | 5인 미만    |            |       |
| 41.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P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| Q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    | S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


### 3.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?

- 지원대상(①집합금지업종, ②영업제한업종, ③일반업종)에 해당되더라도,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회계사·병원 등 전문직종,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다만,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.
- 아울러,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# 관련 참고

#### 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(14개 업종)

\*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』 제125조

- 학습지 교사, 방문 교사
- 대리운전 기사, 퀵서비스 기사, 택배기사, 건설기계 운전기사
- 보험설계사, 대출 모집인, 신용카드 모집인
- 방문 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 기사
- 화물자동차운전사, 골프장 캐디

**참고**

**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(148개)**

| 표준산업분류                | 업종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33409 중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|
| 46102 중               | 담배 중개업   |
| 46107 중               | 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|
| 46209 중               | 잎담배 도매업  |
| 46333                 | <b>담배 도매업</b><br>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 |
| 46416, 46417 중        | 모피제품 도매업<br>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|
| 46463 중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|
| 47640 중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|
| 47811 중               | <b>약국, 한약국</b>   |
| 47859 중               | <b>성인용품 판매점</b>  |
| 47911, 47912 중        | <b>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</b>   |
| 47993 중               | 다단계 방문판매   |
| 52991 중              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   |
| 56211                 | <b>일반유희주점업</b>   |
| 56212                 | <b>무도유희주점업</b>   |
| 58122 중               |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|
| 58211, 58212, 58219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 |
| 63999 중              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|
| 64                    | 금융업  |
| 65                    | 보험 및 연금업   |
| 66                   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|
| 68                    | <b>부동산업</b><br>* <b>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</b> 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<br><br>* 단, <b>부동산관리업(6821)</b> ,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 가능</b><br>- 부동산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<br>- <b>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</b>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|
| 76390 중              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|
| 711, 712             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|
| 731                   | 수익업  |
| 73904 중               | 감정평가업  |
| 75330                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   |
| 75993                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|

| 표준산업분류  | 업종  |
|---------|---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|
| 86      | 보건업<br>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 가능<br>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 가능<br>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 |
| 91113  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|
| 91121   | 골프장 운영업   |
| 9122 중  | <b>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</b>  |
| 91221 중 |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|
| 91241 중 | <b>복권 판매업</b>   |
| 91249  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|
| 91291   | <b>무도장 운영업</b>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 |
| 9612 중  |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<br>* 안마원 규모(300m <sup>2</sup>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 |
| 96992  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  |
| 기타      |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▶ **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** 지원 불가

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▶ **기타**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

#### 4. 특별피해업종이란?(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)

- '특별피해업종'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(운영시간 제한, 배달·포장만 허용) 조치\* 대상 소상공인입니다.

\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
<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>

| 구분     | 해당 업종 및 시설  |
|--------|---|
| ① 집합금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전국) 콜라텍, 유흥주점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뷔페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실내집단운동, 실내스탠딩공연장, PC방</li> <li>(수도권) 학원(10인 이상)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실내체육시설</li> </ul> |
| ② 영업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수도권)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(21시~05시 포장·배달만 가능),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·제과제빵·아이스크림/빙수 전문점(포장·배달만 가능)</li> </ul>   |

- 다만, 8.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,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\* 예) 8.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(놀이공원, 게임장, 오락실 등)

#### 관련 참고

-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(중수본 발표기준)

| 구분   | 수도권   | 비수도권      |
|------|---|-----------|
| 집합금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위험시설 12종*(유통물류센터 제외) 집합금지</li> <li>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</li> </ul> |           |
|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원(10인 이상)·독서실·스터디 카페·실내체육시설(헬스장, 당구장 등) 집합금지</li> <li>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추가</li> </ul>   | ○ 해당사항 없음 |
| 영업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 21시 이후 다음날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li>○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/ul>   | ○ 해당사항 없음 |

### 5.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?

- 새희망자금(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(재난지원금 등)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.

### 6.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?

-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(복지부)· 긴급고용안정지원금(고용부)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.

### 7.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새희망자금은 '20.5.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, 신청일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인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단, 휴업한 상태에서 정상 운영으로 변경하여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또한 세금체납자(국세, 지방세)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.

### 8.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?

-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
## 9.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새희망자금의 경우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,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- 외국인 사업자로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.

## II

## 자금신청 관련

### 10. 새희망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?

- (신속 지급) 9.23~24일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.24일(목)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다만, 원활한 신청·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(9.24~9.25)까지는 2부제(홀짝제)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 2부제(홀짝제) 접수 >

| 접수일            | 9.24(목)                  | 9.25(금)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자등록번호<br>끝자리 | 짝수<br>(예 : 123-45-67890) | 홀수<br>(예 : 123-45-67891) |

- (확인 지급)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.16일(예정)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(2부제 접수)을 하시면 되고,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.26일(예정)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 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. 단, 원활한 신청·접수를 위해 5부제로 접수합니다. 정확한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.

< 5부제 접수 >

| 접수 요일          | 월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| 화요일  | 수요일  | 목요일  | 금요일  | 토·일요일<br>(공휴일 포함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자등록번호<br>끝자리 | 1, 6<br>(예 : 123-45-67891) | 2, 7 | 3, 8 | 4, 9 | 5, 0 | 휴무로<br>접수불가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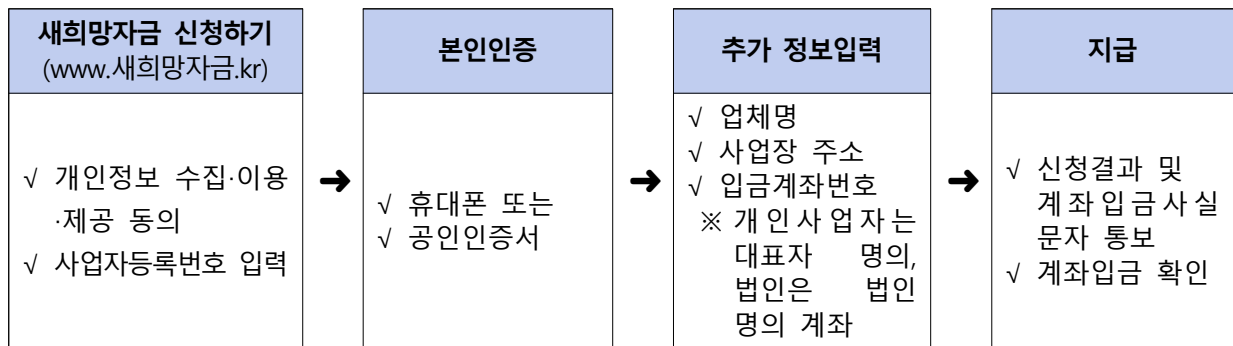
### 11.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(네이버, 다음 등)에서 “소상공인 새희망자금”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(www.새희망자금.kr)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,
-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(추석 직후 안내)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## 12.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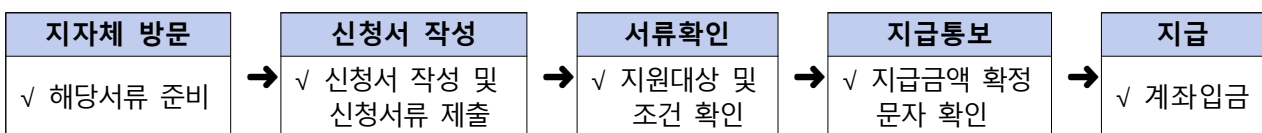
- **온라인 신청**(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: 일반업종, 특별피해업종 일부\*)
  - \* 국세코드로 구분이 가능한 집합금지 4개 업종(전국: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/ 수도권: 독서실, 실내체육시설), 영업제한 3개 업종(수도권: 제과점,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)
- 국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,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.
- 신청결과는 [새희망자금 홈페이지] - [신청결과 확인]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### < 온라인신청 절차 >



- **지자체 방문 신청**(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: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, 공동대표 사업장 등)
  - “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, 매출증빙서류, 통장사본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### < 방문신청 절차 >





### 13.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
-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([www.새희망자금.kr](http://www.새희망자금.kr))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.
-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.
  - 온라인 문의 : [새희망자금 홈페이지([www.새희망자금.kr](http://www.새희망자금.kr))] - [24시간 채팅상담] 이용
  - 전화 문의 : ☎ 1899-1082 (새희망자금 콜센터, 09~18시 운영)

### 14.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?

-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. 단,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-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,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- \*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
  -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(고령자, 시각장애인, 중증환자 등)은 가족, 직원,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.  
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.
  - 휴대폰이 타인 명義이고,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
### Ⅲ

## 지원금액 관련

15.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. 피해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?

-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집합금지업종(200만원), 영업제한업종(150만원), 일반업종(100만원)

16.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?

-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, 특별피해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에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.

17.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?

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,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.

## IV

## 매출감소 판단 관련 (일반업종만 해당)

### 18.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- '19년 이전 창업자는 '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, '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'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(감소율은 무관) 한 곳입니다.
- '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한 자는 올해 6~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8월 매출액이 6~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(감소율은 무관)한 곳입니다.

< 매출 감소 판단기준 >

| 구 분            |       | 기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교 매출액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'19년 이전<br>창업자 | 일반과세자 | '20년 1~6월 월평균 매출액                   | '19년 월평균 매출액       |
|                | 간이과세자 | '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<br>* '21년 매출 신고시 확인 |                    |
| '20년 창업자       |       | '20년 8월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| '20년 6, 7월 월평균 매출액 |

### 19. '19년은 매출이 없고 '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? ('19년에 창업했으나 '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)

- '20년 매출이 '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,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 20. 올 4월에 창업했지만,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 (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)

- 새희망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